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585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효승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15,147,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47,0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여수지법원 2020차전1916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20. 7. 28. ‘C는 원고에게 13,435,774원과 그중 2,500,004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20. 10.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5,147,009원이다.

나. 피고와 C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C의 아버지 D은 2021. 6. 2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E, F, G이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지분 각 1/5).

D의 상속인들은 2021. 7. 1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21.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5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나. 가액배상

피고는 2021.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2. 6. 20.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9호증의 1, 2).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 가액이다.

갑 9호증의 1, 2에 의하면 2022. 5.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억 6,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시가는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1/5 지분) 가액은 3,200만 원(=1억 6,000만 원×1/5)이다. 한편, 원고의 양수금 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147,009원이므로,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양수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원고가 구하는 15,147,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147,0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여수시 대 166㎡

2. 전라남도 여수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55㎡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4.7㎡ 끝.

